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
PROSECUTION SERVICE

##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유희원

전화 041-840-4303 / 팩스 0502-193-4972

보도자료  
2023. 1. 31.(화)

제 목

### 「공주교도소 수형자 피살 사건」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전원 살인죄 인정 및 사형 등 중형 선고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 금지정보

□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피고인 A○○가 피고인 B○○, C○○와 함께 수용거실에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, 이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해한 「공주교도소 수형자 피살 사건」의 공판과정에서,

- ① 추가 증거자료 확보·제출, ②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고 방치한 피고인 B○○, C○○에 대하여 살인방조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, ③ 교도소 현장 검증, ④ 쟁점 정리 의견서 제출 등 **적극적이고 충실한 공소유지 활동을 수행한 결과,**

- '23. 1. 26.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살인죄가 인정되고, 피고인 A○○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, B○○, C○○에 대하여 각각 징역 14년,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음

□ 앞으로도 검찰은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자와 유족 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

※ 피해자의 유족은 항소심 결심 공판 유족 진술 시 ‘공판검사가 1심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주었다’라며 감사의 뜻을 표시

## 1 피고인

- A○○(남, 27세, 강도살인 무기수), B○○(남, 20세), C○○(남, 28세)

※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공주교도소 수형 중

## 2 범죄사실의 요지

### 1. 피고인들의 공동 살인 범행

- ① '21. 12. 3. ~ '21. 12. 21. 21:25경 반복적으로,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(남, 40대)의 목을 조르고 복부 등을 구타하는 등 폭행하고,
- ② '21. 12. 21. 21:25경 ~ 22:40경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잠든 것처럼 위장하는 등 방치하여 가슴과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

### 2. 피고인들의 단독 범행['21. 12. 3. ~ '21. 12. 21.]

- A○○는 빨래집게로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비틀고, 샤프 연필로 다리를 1회 찌르고, 상습으로 명치, 복부를 때림 [성폭력처벌법 위반(특수강제추행), 특수상해, 상습폭행 등]
- B○○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긴 페트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려놓고 버티게 하여 화상을 가하고,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, 명치, 발목 등을 때림 [특수상해, 폭행]
- C○○는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림 [폭행]

### 3

## 진행경과

### 1. 수사 및 1심 재판 경과

- '22. 1. 11. 특별사법경찰(공주교도소), 상해치사죄 등으로 송치
- '22. 1. 21. 공주지청, A○○ 살인 등, B○○, C○○ 각 살인방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

※ 검찰은 수용거실 내 혈흔 및 DNA 분석, 법의학 자문의뢰 등 보완수사를 통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 및 살인방조죄 등으로 의율 변경하여 기소

- '22. 3. ~ '22. 7. 공판준비기일, 7회 공판기일 및 교도소 현장검증 진행  
- 공판검사는, ① 3회 기일에 걸친 면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함께 번갈아 망을 보면서 약 보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,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마스크와 안대를 씌우고 이불을 덮는 등 잠든 것처럼 위장하며 방치한 사실을 확인하여 B○○, C○○에 대한 살인방조죄를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하고, ② 약 19일간의 수용거실 앞 복도 CCTV 영상 전부 확보 및 분석,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후 순찰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의 진술 확보, 교도소 현장검증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통해 변경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추가증거로 제출

※ 검찰 구형 : A○○(사형), B○○, C○○(각 징역 20년)

- '22. 7. 27. 1심 판결 선고  
- 선고 결과 : A○○ 살인(무기징역), B○○ 살인방조(징역 5년), C○○ 살인방조(징역 2년 6월)

※ B○○, C○○에 대한 살인 무죄 이유 : B○○, C○○가 망을 본 것을 넘어 A○○와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

## 2. 항소심 재판 경과

- '22. 9. ~ '22. 12. 5회 공판기일 진행
  - 1심 공판검사가 항소심까지 직관하여, ① A○○ 재차 증인 신청, ② B○○가 수사 도중 C○○에게 건네기 위하여 작성한 편지 확보, ③ 피고인들의 수감 중 징벌내역 전부 확보·분석 등을 통해,
  - B○○, C○○가 수사과정에서 A○○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말을 맞춘 사실을 확인하고, A○○에 대해 추가로 확보된 다수의 폭행 관련 징벌내역을 바탕으로 사형 선고의 필요성 강조
- '23. 1. 26. 항소심 판결 선고
  - 선고 결과 :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살인 유죄 선고 [A○○ 사형, B○○ 징역 14년, C○○ 징역 12년 선고]

## 4

### 의의 및 향후 계획

-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부터 A○○만의 범행인 것처럼 통모하여 A○○의 단독 살인으로 실체가 왜곡·축소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, 공판 과정에서 핵심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B○○, C○○도 함께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여 살해한 공동 살인 범행임을 규명하고, A○○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, B○○에 대해 징역 14년, C○○에 대해 징역 12년 등 중형을 선고받게 함
- 향후에도 검찰은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,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정의를 세움과 동시에, 피해자, 유족 등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 ☑